

, 주소

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

청 구 인 ○ ○ ○ (전화)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

사건본인 ○ ○ ○

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)

주소

등록기준지(국적)

청 구 취 지

- 1.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.
- 2.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를 선임한다.

라는 심판을 구합니다.

청 구 워 인

- 1.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(母)이며, 사건본인은 정신지체장애인입니다. 사건본인은 성인이 되었으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.
- 2.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로서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들인 사건본인을 돌보아야 하므로,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합니다.
- 3.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및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,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

각 별지 기재와 같이 지정해주기를 바랍니다.



한정후견인 후보자	성명	
	주소	
	주민등록번호	
	직업	
	사건본인과의 관계	

첨 부 서 류

- 1.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(청구인, 사건본인, 후견인후보자) 각 1통
- 2. 주민등록등본 (사건본인) 1통
- 3. 사건본인 및 후견인후보자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) (후견등기사항이 없는 경우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) 각 1통
- 4.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 등) 1.항의 자료만으로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) 각 1통
- 5. 진단서 1통
- 6. 사전현황설명서 1통
- 7. 기타(소명자료)

2013 . O. O.

위 청구인 ○ ○ ○ (인)

ㅇㅇ가정법원 귀중



사전 현황 설명서

1.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		TO THE PARTY OF TH			
가.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지	예 🗌	아니오□			
나. 임의후견을 받고 있는지	예 🗆	아니오□			
다.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료 상황					
라.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와 동거하고 있는지					
마. 재산상황 (목록으로 작성하여 별지로 첨부 가능)					
2. 한정후견을 청구하게	된 동기와 목적(구체적으로 기재)				
3.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1순위 상속인들의 의견					
가. 동의자(동의서 첨부)					
나. 부동의자					

(별 지 1)

기 1)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·

I. □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없음
Ⅱ. □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있음
1. 재산관리 ↑. □ 부동산의 관리・보존・처분 □ 매각 □ 구입 □ 임대차계약의 체결・변경・종료 □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□ 전세권,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·변경 □ 부동산의 신축・증축・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・해제 나. □ 예금 제좌의 개설·변경·해약·입금·이체·인출 □ 증권 계좌의 개설·변경·해약·입금·이체·인출 □ 중권 계좌의 개설·변경·해약·입금·이체·인출 □ 장기적 의 제절・변경・해제 □ 보험데 관한 사항 □ 보험계약의 체결・변경・해제 □ 보험금의 수령 라. □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□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□ 정기적 수입(임료, 연금, 사회보장급여 등)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□ 저출(임료, 요금, 보험료, 대출원리금 등)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□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. □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상속의 승인・포기 바. □ 중서 및 유체동산의 보관 및 관리 사. □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□ 근로계약의 체결·변경·해제 □ 임금의 수령
2. 신상보호 가. □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□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・변경・해제 및 비용의 지급 □ 복지시설 입소계약의 체결・변경・해제 및 비용의 지급 나. □ 의료계약의 체결・변경・해제 및 비용의 지급
3. 기타 가. □ 소송행위 등 □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□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. □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. □ 기타 사항 □



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

I. 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없음
II. 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있음
1. 재산관리 ↑. □ 부동산의 관리・보존・처분 □ 매각 □ 구입 □ 임대차계약의 체결・변경・종료 □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□ 전세권,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·변경 □ 부동산의 신축・증축・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・해제 나. □ 예금 등의 관리 □ 예금 계좌의 개설·변경·해약·입금·이체·인출 □ 증권 계좌의 개설·변경·해약·입금·이체·인출 □ 증권 계좌의 개설·변경·해약·입금·이체·인출 다. □ 보험에 관한 사항 □ 보험계약의 체결・변경・해제 □ 보험금의 수령 라. □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□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□ 정기적 수입(임료, 연금, 사회보장급여 등)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□ 정기적 지출(임료, 요금, 보험료, 대출원리금 등)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□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
마. □ 상속재산의 분할 또는 상속의 승인·포기 바. □ 증서 및 유체동산의 보관·관리·구입·처분 사. □ 공법상의 행위(세무신고 등)
2. 신상보호 가. □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□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·변경·해제 및 비용의 지급 □ 복지시설 입소계약의 체결·변경·해제 및 비용의 지급 나. □ 의료계약의 체결·변경·해제 및 비용의 지급 다. □ 공법상의 행위(주민등록, 공적의료보험,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신청 및 갱신 등)
3. 기타 가. □ 소송행위 등 □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□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. □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. □ 기타 사항 □



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

□ 결정권한 없음	
□ 결정권한 있음	
1. □ 의료행위의 동의	
2. □ 거주·이전에 관한 결정	
3. □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	
4. □ 우편·통신에 관한 결정	
5. □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	
6. □ 기타 사항	
	-
	-

제출법원	사건본인(피후견인이 될 사람)의 주소지 가정법원(지방법원,	지원 w	
청구권자	·민법 제777조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, 피후견인, 친족, 이해관계인, 검사, 지방자치단체의 장		
제출부수	신청서 1부 관련 법 규 민법 제959조의 2, 가사소송	법 제44조	
불복절차 및 기간	 한정후견개시에 관한 심판에 대하여 청구인은 즉시항고(가사소 송법 제43조, 가사소송규칙 제36조) 불복기간: 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(가사소송법 제43조제5항, 가사소송규칙 제31조) 		
비 용	・인지액 : 사건본인 수×5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・송달료 : 청구인 수×3,700원(우편료)×10회분		
후견인 결격사유	민법 제937조		

※ 후견인의 결격사유 (민법 제937조)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.

- 1. 미성년자
- 2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피특정후견인, 피임의후견인
- 3.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
- 4.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(형기) 중에 있는 사람
- 5.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
- 6.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, 한정후견인, 특정후견인,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
- 7.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
- 8.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